

국민생각함	—	공무원불친절	▼	민원부조리·부패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	—	보조금부정수급신고	—
복지사각지대 신고	—	환경신문고	—	안전신문고	—
식품안전소비자신고	—	부동산불법거래신고	—	규제개혁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	공익신고	—		

 **민원 응답이 없는 공무원**  답변(1) 처리완료

2024-05-13 | 양*진 | 11

 민원부조리 처리의 부조리.hwp [30 KB]  파일 내려받기  1번째 파일 삭제

기본이지만 공무원의 업무에는 민원응답이 있습니다.

2024.3.19, 이상률 경제도시국장을 만나 첨부화일을 건네며
 공주시 도로과의 행정처리 부조리에 대해 잘못함을 알리며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국장은 '민원서류 없이 공주시의 응답공문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며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어 2024.4.29 경제도시국장실을 방문하여 재차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경제도시국장은 응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4.5.13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민원응답이 없는 이상률 경제도시국장을 불친절공무원으로 신고합니다.

민원내용이 법령상으로 맞는지 아닌지 응답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시민을 무시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이 것은 민원결과를 떠나서 불친절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불친절신고를 하니 확인 후 시장님의 적절한 조치바랍니다.

☰ 목록 🔗 링크복사

🔧 수정 🗑️ 삭제

A [답변] 민원 응답이 없는 공무원

2024-05-23 18:03:53 | 조사팀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경제도시국장에게 구두상으로 행정처리 부작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답변을 주지 않아 발생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가. 귀하께서 경제도시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도로점용 허가업무와 관련 공무원의 부작위에 관한 민원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되며, 고충민원 접수 시에는 민원처리법 제8조(민원의 신청)에 따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합니다.
 - 나. 이에 따라 해당민원 내용이 불친절 또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임광훈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글 조례에서 규제강화를 한 이유는 2

2024-05-19

✓ 이전글 의장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05-13
